

 <p>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p>	<h1>보도자료</h1>	2016. 2. 26(금)	
		<p>작성 문의</p>	<p>국무조정실 안전정책과장 민성호 (Tel. 044-200-2341)</p> <p>국무조정실 해양교통정책과장 송기진 (Tel. 044-200-2239)</p> <p>국무조정실 안전관리과장 신강민 (Tel. 044-200-2346)</p> <p>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 강용삼 (Tel. 044-201-4601)</p> <p>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장 임상규 (Tel. 02-2100-0431)</p> <p>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도환 (Tel.042-481-4250)</p>
<p>엠바고</p>	<p>26일 11시 (회의종료) 이후 사용/ 모두말씀 별도 배포</p>		
<p>공동배포</p>	<p>국토부, 안전처, 산림청</p>		

“안전수칙 위반, 제재 사각지대 없앤다”

- 총리 주재 ‘제8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74개 안전법령 정비계획 확정
- 도시철도 현장점검(1.16)에 이어 안전대책 논의, “안전수칙 법제화·제재 강화 추진”

□ 정부는 26일(금)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안전대책」, 「봄철 산불 안전대책」,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황 총리는 취임 이후 「국민안전 민간합동회의」를 신설해 분야별 안전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도시철도 안전대책」과 함께, 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큰 「산불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 또한, 국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 : 안전별 상세 내용

① 도시철도 안전대책

- 고장빈발 및 노후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 우선 실시(25년→20년)
 - * 노후부품 점검·정비 등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7년)
- 종사자 현장안전수칙을 법제화하여 제재 강화*
 - * 자체징계 → 형벌, 과태료(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 경영평가에 안전목표 추가 등 운영사 안전평가 강화

② 봄철 산불 안전대책

-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확대(면적 29% → 30% 이상), 화기물 소지 금지 구역의 실질적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 강화
-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 강화, 산불 가해자 검거율 제고(30%대 → 50% 수준), 산불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해 양형수준 상향 추진
- 야간산불·도시산불 대응을 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10개조 100명), 산불감시와 진화에 드론 활용 추진(10대 운용, 지속확대 추진)

③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

- 안전수칙 위반시 처벌의 적정성 검토, 74건에 대해 합리적 제재수단 마련
 - △ (제재신설) 사격장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시 벌금부과,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시 벌금 부과 등
 - △ (제재 강화)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시 제재 상향, 소방시설 사용방해로 인명 피해 발생시 가중처벌
 - △ (제재 보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금연규정 확대(목조문화재 등 일부 → 전체) 등

- 황총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하철 역사(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6)를 방문하여 도시철도 관련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다음달 초에는 산불안전 현장도 방문하여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① 노후차량 및 시설 집중관리

- (차량·부품관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한 교체주기 산정(현재 제작사 제시), 점검주기 단축 및 적기 정비·교체('16년~)
 - 고장빈발 및 노후도가 심한 차량부터 정밀안전진단 우선 실시
 - 고장빈발부품을 중심으로 점검·정비·교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17년)
- (노후시설 관리) 노후시설, 고밀도 역사 등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정비와 안전인력배치 강화하고, 노후도 심각한 시설부터 우선 개량

② 종사자 등의 안전책임 강화

- (안전수칙 위반 제재강화) 종사자의 현장 안전수칙을 법제화*하여 미준수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자체징계→형벌, 과태료) ('16년)
 - 대형 철도사고 기준을 강화(10명→5명)하고 사고시 과징금 확대(1억→30억)
- (운영사 평가강화) 공기업(도시철도 포함) 경영평가에 안전목표를 강화하고, 운영사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16.下 시범사업 실시)

③ 비상대응 역량 강화

- (비상대응 체계 개선) 승객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비상매뉴얼을 전면 점검·개선('16년)
- (이용객 안전문화 확산) 이용자 안전수칙 홍보를 다각화(웹툰, 인포그래픽, 음성안내)하고,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④ 철도안전 관리감독 역량 강화

- (감독업무 강화) 도시철도 운영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감독 강화를 유도하고, 전담조직 정비 및 철도안전감독관 증원 추진
- (법·제도 정비) 국가·지자체·운영사의 역할·책임을 명확화하고 분야별 철도안전 기준 세분화('16년)

1 산불 취약시기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

-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앙 및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316개) 운영, 24시간 상황유지 및 대응태세 강화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 감시인력 집중 배치(12천명)

2 원인별·맞춤식 산불예방대책 추진

- (입산객 관리) 산불경보 '경계' 이상시 입산통제구역 확대(면적29%→30%이상)
 - 입산통제구역 외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실질적 운영
- (소각산불 차단) 취약지역 중심으로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 실시
 - 농·산촌 영농폐기물, 쓰레기 수거 확대

3 산불 신고·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

- (과학적 감시) GPS 신고단말기(13천대), 밀착형 무인감시카메라 확충
 - 산불감시·단속 등 현장 대응에 드론 시범 활용(10대, 지속확대 추진)
- (홍보 강화) 방송4사 자막방송, 기상예보시 산불위험 안내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대국민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

4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지상진화대) 산불조심기간 중 전문진화대원(1만명) 시군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진화대(193팀) 운영하여 초동진화와 뒷불감시 전담
 - 도시지역, 야간산불 등 대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시범 운영(10개조 100명)
- (산림헬기) 지자체 임차(64대) 및 유관기관(군16, 소방27) 헬기 공조진화 강화

5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재발

- (가해자 검거·처벌)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 제고(‘15) 38.5%→ 50% 목표)
 -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 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강화 추진 (법정형보다 관대화 경향 → 양형/구형기준 상향)
- (산불조사 강화) 지역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 지원, 민간 산불전문가 양성

□ 추진배경

- 돌고래호(‘15.9.5) 사고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피해 확대 → 안전수칙 위반시 처벌의 적절성 검토
 - * 안전수칙 위반 시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 아닌지 전면 검토 할 것(9.14, 국무총리)
- 부처 자체진단 + 보완진단(안전차법무부법제차연구기관) ⇒ 대상 발굴
 - ※(진단기준) △인명관련 △위반 반복발생 △언론국회 문제제기 △선진국 대비 경미 등

□ 개선과제 : 총 74개 과제

- ① (제재 신설, 32건) 제재수단이 없어 이행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재 신설
 - ▷ 사격장의 안전 관리 의무 미준수에 대해 벌금, 영업정지 신설(현행은 부적격자 사격시 등만 처벌)
 - ▷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 미이행시 과태료 신설
 - ▷ 낚시어선 승객 구명조끼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현행은 선장만 부과)
- ② (제재 강화, 32건)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의도적 의무해태가 우려되는 경우 등 제재의 효과성이 낮은 경우 제재 상향
 - ▷ 일회용 주사의료용품에 대한 제한근거 명확화 및 제재 강화
 - ▷ 건강기능식품 금지원료 사용시 제재를 일반식품 수준으로 상향
 - ▷ 소방시설의 무단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도입
- ③ (제재 보완, 10개) 규정 불명확, 세부기준 부재 등 입법불비로 정상적인 제재운영이 곤란한 경우 제재 보완
 - ▷ 소방시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행정처분 승계규정 신설 → 의도적 폐업 방지
 - ▷ 목재 문화재 등에 국한된 금연구역을 화재취약 문화재로 확대

□ 향후계획

- 시행령(6)은 상반기 정비, 법률(68)은 입법계획 수립

□ 생활·여가분야(15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미등록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백만원이하 과태료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2 강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활동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6개월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3 신설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 이하 벌금	【경찰청】 서울원 경감 02-3150-1361	
4 신설	△사격장관리자가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격장의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사격장 운영정지		
5 강화	△사격장에서 총기·석공의 대여·회수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0만원 과태료 ⇨ (개선) 50만원 과태료		
6 강화	△총포·도검·화약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벌금액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		
	총포·화약류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등		10년이하 징역
	도검·분사기 등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등	5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1천만원→3천만원
	화약류를 저장소 외 저장 등	3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700만원→2천만원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	2년이하 징역	벌금 상향 : 500만원→1천만원
7 신설	△영화관 경영자가 화재 등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천만원이하 과태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순일 사무관 044-203-2432	
8 강화	△영화상영관 관리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최대 2백만원 ⇨ (개선) 과태료 최대 3백만원		
9 강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산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이경희 연구관 043-870-5451	
10 강화	△자연공원내 불법산행 등 출입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최대 30만원 과태료 ⇨ (개선) 최대 50만원 과태료	【환경부】 김기용 사무관 044-201-7319	
11 강화	△농약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구매자 등 관련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5백만원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박은엽 사무관 044-201-1895	
12 보완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일부에 대한 금연규정을 전체구역으로 확대 (현행)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일부 금연 ⇨ (개선) 화재취약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금연 * 금연구역 미지정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재청】 이명선 사무관 042-481-4821	
13 신설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을 면제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국민안전처】 김희정 경위 032-835-2251	
14 보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권자 명확화 (현행) 과태료 부과권자 부정확 ⇨ (개선)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기	【교육부】 정민재 사무관 044-203-6898	
15 강화	△제품결함에 대한 내부신고자에 대해 사업자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 (개선) 처벌상향(연구중) 1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장요한 서기관 043-870-5411	

□ 의료 · 보건분야(12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금지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10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삼룡 사무관 043-719-2459
2 강화	△의료기기 수입시 시험검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강화 (현행) 행정처분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영진 사무관 043-230-0415
3 신설	△식품·의약품의 시험·검사인력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명신 서기관 043-719-1811
4 강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명확화 및 제재 강화 (현행) 시정명령(미이행시 행정처분) ⇨ (개선) 금지행위 명확화 및 제재강화(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044-202-2472
5 신설	△인체조직을 수입하는 조직은행장이 수입조직 관리현황 미작성·미비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남수 사무관 043-719-3310
6 신설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허가취소 또는 1년내 업무정지	
7 신설	△조직은행 등이 인체조직 회수·폐기명령 불이행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8 보완	△장애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정인호 서기관 044-202-3305
9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실태 부실·허위보고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0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1 보완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현행) 타법 행정처분 세부기준 적용 ⇨ (개선) 별도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12 신설	△시체 반입시 검역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검토중)	

□ 건축 · 산업분야(9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건축물 시공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5백만원이하 벌금 ⇨ (개선) 5천만원이하 벌금	【국토교통부】 이경민 사무관 044-201-3765
2 신설	△송유관 안전관리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 양영훈 주무관 044-203-5138
3 강화	△전기공사사업자가 무등록 영업 또는 거짓·부정 등록시 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산업통상자원부】 김기호 사무관 044-203-5243
4 강화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 이원주 서기관 044-202-7683
5 강화	△산업재해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강화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강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한 경우 벌칙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개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류관훈 사무관 044-202-7723
7 신설	△영업정지 중인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영업을 지속한 경우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조항 신설(1차 위반시에도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 류창환 사무관 044-203-5135
8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을 방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벌칙 부과	【국토교통부】 조은혜 사무관 044-201-3758
9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부과	

□ 교통·운송분야(11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현행) 영업정지만 규정 ⇨ (개선) 영업정기 기간 강화(1차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사업장 폐쇄조항 신설(2차 위반시 영업폐쇄)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044-203-3156
2 강화	△적재불량 화물차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마련 (현행) 2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 (개선) 벌점 추가(15점)/3회 위반시 면허정지 가능	【경찰청】 전영식 경감 02-3150-0598
3 신설	△자전거 음주운전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4 신설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주차금지구역 지정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5 신설	△자전거도로로 차량통행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6 보완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현행) 행정처분 기준 없음 ⇨ (개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마련	
7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가 사고시 안전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국토교통부】 권유정 사무관 044-201-4889
8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 보험 미가입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 신설	△케이블카 등 궤도운송사업자·종사자 및 이용객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제재수단 마련(연구중)	
10 신설	△항공운송의 위험물포장·용기 검사기준 위반시 검사기관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국토교통부】 곽영필 사무관 044-201-4255
11 보완	△항공기 기장 등 조종사의 자격인증의 취소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율 (현행)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규율 ⇨ (개선) 법률에서 규율토록 상향	【국토교통부】 강정현 사무관 044-201-4312

□ 소방·방재분야(6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시설설치, 저장·취급시 처벌 강화 (현행) 1년이하 징역 ⇨ (개선)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억원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이동원 소방령 02-2100-0865
2 강화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가중처벌 (현행) 5년이하 징역 ⇨ (개선) 상해시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벌금 사망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손용준 소방경 02-2100-0847
3 강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처벌 강화 (현행) 2백만원이하 과태료 ⇨ (개선) 3백만원이하 과태료	
4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등록시 신고의무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2백만원이하 과태료	【국민안전처】 박홍수 소방장 02-2100-0876
5 보완	△소방시설업 폐업후 재등록시 지위승계 신설로 부실운영 방지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폐업전 행정처분 승계	
6 강화	△119 이용자가 허위신고 및 이송 후 의료기관 미이용시 가중처벌 (현행)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 (개선) 1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국민안전처】 윤진희 소방경 02-2100-0899

□ 해양·선박분야(21개)

연번	정비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담당자
1 강화	△해상 검문검색 거부, 방해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안전처】 김희진 경감 032-835-2241
2 강화	△소형선박의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3백만원 이하 ⇨ (개선) 벌금 5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강석진 사무관 044-200-5820
3 신설	△어선검사 대행기관 검사원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4 신설	△어선검사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행정처분 도입	
5 신설	△항만시설소유자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태민 사무관 044-200-5950
6 신설	△항만시설장비의 검사대행기관이 부적정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도입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7 신설	△낚시어선 탑승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조수정 주무관 044-200-5539
8 신설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9 신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1백만원 이하	
10 강화	△해양사고 증인진술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강화 (현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2천만원 이하	
11 강화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권고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신영락 사무관 044-200-6130
12 강화	△해양사고 증거파기 등 보전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3 강화	△해양사고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사고조사 방해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4 강화	△해양사고 조사관의 조치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5 강화	△해양사고 심판시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2백만원 이하 ⇨ (개선) 과태료 5백만원 이하	
16 강화	△해양안전심판원의 소환 등 불응시 처벌 강화 (현행) 과태료 50만원 이하⇨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17 보완	△유·도선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안전관련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현행)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 불분명 ⇨ (개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18 신설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5백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 김형덕 사무관 044-200-5523
19 신설	△항만시설장비관리자가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자체검사를 부적절하게 실시한 경우 처벌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과태료 2백만원 이하	【해양수산부】 최광학 서기관 044-200-5949
20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면제받은 항만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선) 시설장비 사용중지 규정 신설	
21 강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운항할 경우 음주운항 수준으로 처벌 강화 (현행) 영업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 ⇨ (개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추가	【해양수산부】 조수정 주무관 044-200-5539

붙임 4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진실적

구분	안 건
1차 (15.7.29)	여름철 식품 안전대책 (식약처) 야영장 안전대책 (문체부)
2차 (15.8.31)	교통·철도 안전대책 (국토부, 경찰청) 여객선 안전대책 (해수부)
3차 (15.9.23)	추석절 안전대응체계 및 운용계획 (안전처) 학교 안전대책 (교육부) 대규모 놀이시설 안전대책 (문체부)
4차 (15.10.21)	건설공사장 안전대책 (국토부) 하청근로자 안전대책 (고용부)
5차 (15.11.24)	동절기 안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안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6차 (15.12.9)	안전혁신 1년 및 중점 추진과제(안전처)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국조실)
7차 (16.1.29)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식약처) 소방 역량 강화 종합대책 (안전처) 설 명절 안전대책 (관계부처 합동)
8차 (16.2.26)	도시철도 안전대책 (국토부) 봄철 산불 안전대책 (산림청)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안전처)